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9. 30 선고 2020가단383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석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1) . 피고 B과 D 사이의 경남 고성군 E 24,893㎡에 관하여 2015. 9. 2. 체결된 매매예약 계약 및 2020. 1.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B은 D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5. 9. 7. 접수 제161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20. 2. 7. 접수 제26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본다.

1)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4. 4. 24. D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4. 4. 24. 위 대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경남 고성군 E 임야 24,89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3,306/24,893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D의 자녀인 피고 B은 2015. 9. 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5. 9. 2.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원고는 2017. 12. 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F로 위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7.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8. 4. 20. D으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위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취하하여, 2018. 4. 25. 임의경매개시결정의 부기등기가 말소되었다.

원고는 2018. 12. 4.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카단1299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8. 12. 5.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8. 12. 18.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단708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G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15.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D은 2019. 1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단39023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피고 B은 2020. 2. 7.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2020. 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마쳤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20. 4. 21.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위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위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가압류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원고는 2020. 8. 27.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와 D은 2014년경 피고 C의 소개로 만나 3년 가량 연인으로 지낼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2. 6.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할 당시 그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D과 그 자녀인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이 자신을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적어도 D과의 협의에 따라 1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한 이후 다시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한 2018. 12. 4.경에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은 이미 도과해 버렸다.

2)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본등기의 기초가 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는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다172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2020. 1. 15.자 매매계약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2020. 2. 7.자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에 앞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그 등기원인인 이 사건 매매예약과 위 매매계약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대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상 위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별도로 구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8. 27. 제기된 것으로서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14. 4. 24. D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할 때 피고 C이 D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D이 2018. 4. 20.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21.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만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취지에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주채무자인 D과 연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